

의안번호	제81호
의결연월일	2026. 10. .

의결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황 예 원 의원
발의연월일	2026. 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요

의안 번호	81
----------	----

발의연월일 : 2026년 10월 2일

발 의 자 : 황예원 의원

찬 성 자 : 고영임 의원, 김영순 의원, 김혜은 의원,
박은정 의원, 박정하 의원, 배미선 의원,
서은하 의원, 손혜진 의원, 신원근 의원,
신정훈 의원, 유영근 의원, 윤은경 의원,
이재봉 의원, 이정운 의원, 장애란 의원,
정재성 의원, 최기영 의원 등 17명

1. 제안이유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위험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자동제세동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함(안 제6조제2항)
- 자동제세동기 설치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응급처치 교육의 우선 실시 대상을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을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응급처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를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를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원봉사자
3.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 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 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 질환자를 말한다.</u>
제4조(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2. (생 략) 3.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u>교육</u> 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제4조(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교육</u> (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 다)----- 4. · 5. (현행과 같음)
제5조(응급의료재정 지원) ①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u>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u> 필요한 비용	제5조(응급의료재정 지원)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응급처치</u> ----- ----- -----

② (생 략)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
장) ① (생 략)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
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
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
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
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
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
의 관리자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 있으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

----- 응급
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② -----
----- 응급처치 교
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
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3.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관
리자와 종사자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

<u>2.</u> (생 략) ③ (생 략)	<u>속 공무원</u> <u>5.</u>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기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신규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응급처치 교육 또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및 위탁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 작성자 : 복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선희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 2023. 8. 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5. 14.]

현행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2015.09.25 조례 제1211호
(일부개정) 2026.06.30 조례 제2133호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복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

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의료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자동제세동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 관련 단체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133호, 2026. 6. 30.,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